

자치구 지선 하수관로 개량 지원

1 기본 현황

사업개요

회 계	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		
사업기간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연례반복		
사업내용	○ 노후 지선하수관로 개량		
사업위치	서울특별시 전역 25개 자치구		
총사업비	총 5,000,000천원	(국비)	(시비)5,000,000천원
		기타 (예산 외) (구비)	(기타)
사업비 (당해년도)	5,000,000천원	(국비)	(시비)5,000,000천원
		기타 (예산 외) (구비)	(기타)

사업 담당자

실·국	부서명	과 장	팀장	주무관
물순환안전국	물재생계획과	하상문 2133-3780	이인규 2133-3794	강청금 2133-3791

※실국 및 부서명은 예산서 기준으로 작성되어 현재부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2 예산 설명

예산 총괄

(단위 : 천원, %)

구 분	2018예산액 (A)	2019예산액 (B)	증감 (B-A)	(B-A)*100/A
계	(x-) 5,850,000	(x-) 5,000,000	(x-) △850,000	(x-) △14
자치단체자본보조	(x-) 5,850,000	(x-) 5,000,000	(x-) △850,000	(x-) △14

산출근거

과목구분	2019년 예산내역
------	------------

과목구분	2019년 예산내역		
자치단체자본보조	○ 지선 하수관로 공사비 지원 5,000,000,000원	=	5,000,000천원

연차별 투자계획(투자사업의 경우)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계	기투자 (~2017)	2018	2019	2020 이후	비고
계	(x-) 5,000	(x-) 0	(x-) 0	(x-) 5,000	(x-) 0	
자치단체자본보조	(x-) 5,000	(x-)	(x-)	(x-) 5,000	(x-)	

3 사 업 설 명

사업목적

- 노후된 지선 하수관로 개량으로 도로함몰 등 안전사고 예방

사업근거

- 법령상 근거
 - 하수도법 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책무)
- 기타 근거(방침, 지침 등)
 -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5조(공공하수도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)
 -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(지방보조금의 대상사업 등)
 - 지선 하수관로 정비방안 검토(행정2부시장 방침 제 187호, 2006.9.1.)

사업내용

- 위 치 : 서울특별시 전역 25개 자치구
- 규 모 : 하수관로 정비 D450~800mm, L=12,500m
- 사업기간 : 2019. 1. ~ 2019. 12.
- 사업내용 : 노후 지선하수관로 정비
- 총사업비 : 5,000백만원(자치단체자본보조 5,000)

추진경위

- '06. 3. 10 : 자치구 하수과장 간담회시 문제 제기

- 자치구에서는 시에서 교부금을 교부받아 하수분야 예산 편성시 준설, 시설물보수 등 최소한의 시한성 유지관리 예산만 편성하고 있으며, 지선하수관로 개량사업비 편성은 극히 미흡하여 내경 900mm 미만 노후 지선하수관로의 개량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
- '06. 9. 1 : 지선하수관로 정비방안 방침(행정2부시장 방침 제187호)

2019년도 추진일정

(단위 : 천원)

사업추진절차	추진기간	예산집행금액	추진세부내용
계		5,000,000	
보조금 지급	2019.01~2019.02	5,000,000	예산배정계획 수립 및 예산배정
사업시행	2019.03~2019.12		사업완료

4 사업효과

최근 3년 추진실적

2015년도	○ 노후 지선 하수관로 개량 L=7,754m
2016년도	○ 노후 지선 하수관로 개량 L=9,143m
2017년도	○ 노후 지선 하수관로 개량 L=10,358m

향후 기대효과

- 노후 지선하수관로 개량으로 도로함몰 등 안전사고 및 침수 예방
- 자치구간 하수관로 정비 예산 확보를 위한 동기 부여

5 최근 3년 결산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도	최종예산	전년이월	예산변경	예산현액	집행액	차년이월	집행잔액

2015	(x-) 5,000,000	(x-)	(x-)	(x-) 5,000,000	(x-) 5,000,000	(x-)	(x-) 0
2016	(x-) 4,143,000	(x-)	(x-)	(x-) 4,143,000	(x-) 4,143,000	(x-)	(x-) 0
2017	(x-) 4,000,000	(x-)	(x-)	(x-) 4,000,000	(x-) 4,000,000	(x-)	(x-) 0